

2023학년도 제1학기 학사운영 방안(변경)

- 2023. 6. 1, 교무처 -

※ 변경사항은 적색으로 굵게 표기함

1. 관련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0383(2022. 9. 26.)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판 안내”
-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854(2023. 1. 27.)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안내”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476(2023. 5. 2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개정 안내”**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478(2023. 5. 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 안내”**

2. 수립 배경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 22. 9. 26) 반영 유지
- 질병관리청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 반영
- 정부의 대학 학사운영 방안을 고려하여 온전한 교육활동 지속 및 대학 학사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2023학년도 제1학기 학사운영 방안 수립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개정하여 보내온 코로나19 대응 업무 반영**

3. 주요 운영방안

구분	주요내용
시행일자	2023. 6. 1.(목)부터
수업 운영방식	대면수업
비대면수업	원격수업으로 사전 승인된 교과목(e/b/s-러닝)
고사원칙	대면고사 원칙(e-러닝 강의 포함)
성적평가	학업성적 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성적평가 시행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교과목 특성/수강인원 등에 따라 상대평가Ⅰ, 상대평가Ⅱ 또는 상대평가 예외로 구분하여 시행
수업 중 방역관리	- 마스크 착용의무: 학교 통학,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 마스크 착용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 합창 수업,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 입학식·졸업식 합창 등 - 수업 중 환기 실시 등 방역조치 준수
보강주간 운영	공휴일에 따른 보강주간(15주차) 시행 - 보강주간: 2023. 6. 8.(목)~6. 14.(수) - 14주 수업 및 보강이 완료된 강좌에 한하여 보강주간에 기말고사 시행 가능 - 반드시 스마트출결시스템 휴·보강 진행을 통해 15주차 수업 및 고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수강생 전원의 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만 수업 및 고사 가능

※ 학사운영 방안은 교육부 지침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학사운영 방안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칙, 학사에 관한 규정, 각종 시행세칙 및 별도 지침에 따름.

4. 세부 운영방안

가. 대면수업

- 교·강사는 강의시간표에 편성된 해당 주차/요일/교시에, 해당 강의(실습)실에서,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 사전 예고한 교과목 개요/목표/교재/성적평가방법/주차별 수업계획 등에 따라 **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여야 함.

나. 비대면수업

- 원격수업으로 사전에 승인된 e/b/s-러닝 중 온라인시간으로 편성한 교시에 한함.

다. 출결

- 교·강사는 스마트출결시스템을 통하여 블루투스 또는 호명방식으로, 해당 수업시간에 실시간으로 출결사항을 입력하여, 수강생이 출결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출결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업일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출결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라. 중간/기말고사

- 모든 고사(중간/기말고사 등)는 **대면고사로**, 해당 수업일자/요일/교시/강의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험감독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참여함을 필수로 하며, 교과목의 수강인원 과다 등 부득이한 경우만 달리 할 수 있음.
- 교과목에 따라 고사기간 대면고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과제제출 등)으로 대체할 경우 고사기간에 대면수업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함.
- e-러닝에 대한 고사(중간/기말고사 등)는 **대면고사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수강생과 협의하여 시험일과 시험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음.

※ e-러닝 강좌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온라인 시험 허용

- 모든 강좌의 고사 시행이 해당 강좌의 수업일자/요일/교시/강의실과 상이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날짜 및 시간 변경 시 반드시 스마트출결시스템 휴·보강 신청 메뉴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성적평가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교과목 특성/수강인원 등에 따라 상대평가Ⅰ, 상대평가Ⅱ 또는 상대평가 예외로 구분하여 시행함.

바. 공휴일 일괄 휴·보강

- 공휴일에 따른 휴강은 교무처에서 보강주간에 해당 보강일자를 일괄 지정함.
- 보강주간에는 공휴일에 따른 일괄보강 또는 개인사정 등에 따라 사전 승인된 보강만 진행함. **(승인 절차 없이 단순 수업시간 변경 운영은 불가함)**
- 보강주간에는 학기 중 공휴일로 인하여 지정보강일에 배정된 강의 진행이 우선이므로, 휴·보강 진행 시에는 반드시 스마트출결시스템을 통한 절차로 진행하여 수강 학생의 시간표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사. 질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등으로 증빙서류가 있을시 공결신청을 통해 해당기간을 출석인정 받도록 하며, 예비군(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아. 수업 관련 방역 관리

- 방역수칙(손소독, 실내 마스크착용, 강의실 1일 3회 이상 환기, 백신접종 적극 참여 등)은 계속 준수
- 자가검사 활성화: 의심증상 발생 시 자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즉각적 대처 및 확산 방지 필요
- 신속항원검사 시행: 자가검사키트 검사 양성 시 의료기관 시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판정시 의료기관 및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준수

5. 코로나19 확진시 수업운영(변경)

구분	본인 확진	동거인 확진
교·강사	비대면수업(e-Campus 활용) 또는 휴·보강시행 - 검체채취일 기준 5일	신속항원검사 시행 - 음성인 경우 출강
학생	결석계(질병) 신청(증빙서류첨부) - 검체채취일 기준 5일	신속항원검사 시행 - 음성인 경우 등교

- 학생 확진시 스마트출결시스템의 결석계(질병)을 신청하여 출석인정을 받도록 하며,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교·강사는 비대면수업, 학습자료 제공, 과제부여 등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교·강사 판단하에 수업내용을 전달할 수 있음.
- 교·강사 확진시 비대면수업(**5일**)으로 진행하며, 비대면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간 휴강 신청 후 보강을 진행하여 수업결손을 방지하도록 함.
- 고사기간 중 학생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대면고사에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비대면고사, 과제대체 등으로 학생의 성적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 전환)**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좌동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 (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